

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-34호

## 2010년도 개발제한구역외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(안)

2010년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인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구역안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관계 서류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(☎560-4760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09. 7.

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(단위:원/㎡)

지 목	지목별평균치	비 고	지 목	지목별평균치	비 고
전	345,092		하 천	103,092	
답	255,526		제 방	117,363	
과 수 원	219,699		구 거	130,346	
목장용지	434,712		유 지	196,451	
임 야	79,479		수도용지	152,142	
광 천 지	-		공 원	229,218	
염 전	435,520		체육용지	118,906	
대	960,250		유 원 지	-	
공장용지	739,043		종교용지	873,911	
학교용지	998,501		사 적 지	-	
도 로	229,445		묘 지	136,670	
철도용지	258,182		잡 종 지	403,637	
주 유 소	991,967		창 고	499,672	
주 차 장	1,811,708		양 어 장	288,041	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-35호

##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

『주택법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0년 7월 9일

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사 업 명 : 마전지구 39블록 3로트 도시형생활주택(단지형 연립주택)건설공사
2. 사업주체 : 한수건설 정범성외 1인(이영덕)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  - 가. 위 치 : 서구 마전지구 39블록 3로트
  - 나. 대지면적 : 1,713.40m<sup>2</sup>
  - 다. 연 면 적 : 2,716.64m<sup>2</sup>
  - 라. 사 업 비 : 4,000,000,000원
  - 마. 사업규모 : 지상 5층 2개동 32세대
4. 사업기간 : 2010.07. ~ 2010.11.
5.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 처리사항  
건축법 제11조(건축허가)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814호

##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

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사전예방과 함께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0년 7월 7일

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방범CCTV 설치목적 :

-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사전예방과 함께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함.

### 2. 방범CCTV 설치 예정장소

연번	주 소	상세위치	비 고
1	검단동 805-5번지	창신초등학교 후문	
2	공촌동 316-3번지	동우그린빌라 앞	

### 3.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: 2010. 7. 7 ~ 2010. 7.26 (20일간)

### 4. 공고방법 :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seo.incheon.kr>), 각동 게시판

## 5 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접수처 : 인천광역시 서구청 총무과

나. 접수기간 : 2010. 7. 07 ~ 7. 26 (20일간)

다.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(032-560-4099)

라. 문의처 : 인천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(032-560-4092)

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817호

## 분 묘 개 장 공 고(1차)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, 공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(이장)함을 공고 합니다.

1.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서구청장

2. 분묘의 위치 및 기수 :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(49기)

소재지	지번	기수	비고
검암동	산73-2	49	

※ 세부 위치 및 현황도는 구청 사무실 비치

3. 개장사유 : 검암근린공원 국공장 조성공사 사업 추진

4. 개장방법 :

- 유연분묘 :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
- 무연분묘 :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개장, 납골(안치기간:10년)

5. 개장 후 안치장소

- 인천 시립 납골당 (예정, 인천 부평구 부평2동 산52-11)

## 6. 공고기간

- 제1차 공고 : 2010. 07. 08 ~ 2010. 08. 08(공고일로 부터 1개월)
- 제2차 공고 : 2010. 08. 10 ~ 2010. 10. 10(공고일로 부터 2개월)

## 7. 문의처 및 신고방법

-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서구 녹지경관과[(032)560-4803]
- 신고방법 : 연고권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

## 8. 유의사항

- 공사 중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같음합니다.

2010. 07. 08.

# 인천광역시서구청장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820호

##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(변경) 승인에 따른 열람공고

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「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이 『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』 제49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0-4호(2010.07.05.)로 변경지정고시 되었기에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
2. 사업자 성명 :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어윤덕
3. 열람할 서류 :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(변경)

지역	변경내역(m <sup>2</sup> )			비고
	당초	변경	증감	
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440번지 일원	2,203,339m <sup>2</sup>	2,435,580m <sup>2</sup>	232,181m <sup>2</sup>	폐기물처리시설 입주에 따른 연계처리

4. 열람장소 :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
5. 공고기간 : 2010. 07. 09. ~ 2010. 08. 12.
6.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(032-440-4655)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(032-560-5903)

2010. 7. 9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